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 (김태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15

발의연월일: 2020. 7. 2.

발 의 자:김태호·김성원·윤영석

강기윤 · 김예지 · 서일준

윤두현 · 조수진 · 권명호

김석기 · 이양수 · 김형동

의원(12인)

제안이유

우리나라의 제대로 된 지방분권과 지방자치가 구현되지 않는 주된원인 중 하나로는 중앙·지방정부 간의 재정 불균형이 심각하기 때문임. 국세·지방세의 비율도 8:2로 고착돼 있어 실질적인 지방재정자립을 통한 지방분권은 불가능한 실정임.

최근 3년간 도시·지방 간의 재정자립도 추이를 보면 특·광역시의 경우 꾸준히 60%대를 유지하는 반면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열악한 군의 재정자립도는 10%대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동 제정안은 지방세에 대한 납부세액의 100분의 10 이내의 금액을 해당 지방세의 납세지 외의 지방자치단체 중 본인이 지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입(기부금)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을 통한 재정자립을 이끌고 도시·농촌 간의 세수 격차심화를 줄여 안정적인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접수와 고향사랑기금의 관리·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고향사랑 기부금으로 마련된 재원을 주민의 복리 증진 등에 사용하게 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 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 만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 · 접수할 수 있음(안 제4조).
- 다. 기부금은 지방세 일부의 기부를 신청받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제10조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통한 전자결제, 신용카드 또는 자금이체 등의 방법으로 접수하여야 함(안 제6조).
- 라. 기부자는 본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지방세에 대하여 납부세액의 100분의 10 이내의 금액을 해당 지방세의 납세지 외의 지방자치단 체 중 본인이 지정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수 있음(안 제7조)
- 마. 지방자치단체는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한 자에게 물품 또는 경제 적 이익을 제공할 수 있음(안 제8조).
- 바. 지방자치단체는 모금·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여야 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주민의 복리 증진 등의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함(안 제9조).
- 사. 행정안전부장관은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한 주기적인 조사·분석,

연구 등을 통하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정보시스템을 구축·운 영하여야 함(안 제10조).

아. 지방자치단체는 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현황과 고향사랑기금의 운용 결과 등을 공개하여야 함(안 제11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태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1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접수와 고향사랑기금의 관리·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향에 대한 건전 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고향사랑 기부금으로 마련된 재원을 주민 의 복리 증진 등에 사용하게 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고향사랑 기부금"(이하 "기부금"이라 한다)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복리 증진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으로부터 자발적으로 제공받거나 모금을 통하여 취득하는 금전을 말한다.
- 2.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이하 "모금"이라 한다)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광고, 정보통신망의 이용, 그 밖의 방법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기부금을 제공하여 줄 것을 다른 사람에게 의뢰·권유 또는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기부금의 모금·접수 및 사용 등에 대해서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모금 주체 및 대상)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 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만 기부금을 모금 접수할 수 있다.
- 제5조(기부금의 모금 방법) ① 지방자치단체는 광고매체, 정보통신망 (제10조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포함한다), 안내책자·인쇄물의 배부, 그 밖의 적합한 방법으로 기부금의 모금을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는 기부금의 모금을 할 수 없다.
 - 1. 개별적인 전화 또는 서신의 송부
 - 2. 호별 방문
 - 3. 향우회, 동창회 등 사적인 모임에 참석·방문하여 적극적으로 기부 권유·독려
 -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방법과 유사한 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 ② 제1항에 따른 기부금의 모금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기부금의 접수) ① 기부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접수하여야 한다.
 - 1. 제7조에 따른 세액이전 기부 신청
 -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에 납부
 - 3. 제10조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통한 전자결제, 신용카드 또는 자금이체
 - 4.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등 그 밖의 공개된 장소에서의 접수

- ② 지방자치단체가 기부금을 접수한 경우에는 기부금을 기부한 사람(이하 "기부자"라 한다)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명의로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부금의 접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세액이전 기부) 기부자는 「지방세기본법」 제48조의2에 따라 본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지방세에 대하여 납부세액의 100분의 1 0 이내의 금액을 해당 지방세의 납세지 외의 지방자치단체 중 본인이 지정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수 있다.
- 제8조(답례품의 제공)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부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물품 또는 경제적 이익 (이하 "답례품"이라 한다)을 제공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기부자에게 제1항에 따라 답례품을 제공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공하여야 한다.
 - 1. 지역특산품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서 생산·제조 된 물품
 - 2.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서만 통용될 수 있도록 발행한 상품권 등 유가증권
 - 3. 그 밖에 해당 지역의 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것
 - ③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답례

품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현금
- 2. 고가의 귀금속 및 보석류
- 3. 제2항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상품권 등 유가증권
- 4.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제9조(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모금·접수한 기부 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이하 "고향사랑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 ② 고향사랑기금은 기부금을 재원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 1.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
 - 2. 지역 주민들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 3.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 4. 그 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향사랑기금의 관리·운용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제10조(제도의 연구 및 지원)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한 주기적인 조사·분석, 연구 등을 통하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부금의 모금·접수 및 답례품 제공 등의 업무를 지원하고 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며, 이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의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업무를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라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전 문기관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 제11조(결과 공개의무)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의 접수 현황과 고향사 랑기금의 운용 결과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 야 한다.
- 제12조(불법기부금의 반환)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기부금을 기부자에게 반환하고, 교부된 영수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 1. 제4조를 위반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으로부터 기부금을 받은 경우
 - 2. 제5조를 위반하여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기부금을 모금 한 경우
 - 3. 제6조를 위반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을 이용하거나 공개된 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기부금을 접수한 경우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